

2024년 연제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2차 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연제구가족센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 모집기간 : 2024년 06월 10일(월) ~ 2024년 07월 02일(화) 18:00 한
- 모집인원 : 10명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care.idolbom.go.kr/>

①	②	③	④	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 및 양성	2024년 연제구가족센터 2차 아이돌보미 모집	지원신청	상단 첨부파일 작성 및 첨부파일 첨부

※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및 동의서**는 아이돌봄홈페이지 지원신청 하단에 **추가 제출서류에 첨부해주세요**

□ 응시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16:00~20:00 활동 가능자
- 영아(36개월 미만)돌봄 가능자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 2016. 3. 2., 2020. 5. 19.>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2. 컴퓨터(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가능한 자(연계 및 활동일지 작성)
3. 연제구 거주자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전형절차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차시	구분	비고
1차	서류심사	2024. 07. 03. (수)
2차	인·적성검사	2024. 07. 05. (금) - 1차 합격자에 한함
3차	면접심사	2024. 07. 12. (금) - 2차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현장실습	2시간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	최종 합격 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검사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기준 반영

현장실습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 : 2시간(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아이돌보미 보수 및 직무

업 무	시간제일반형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종합형	시간제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단, 가사활동은 제외)
급 여	- 기본시급 : 시간당 10,110원 (2024년 돌봄 1인 기준) (주휴일, 야간.공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단,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활동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정, 회당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주 52시간 준수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4대보험	- 가입(급여에 본인부담금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활동자 가입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불가 - 겸업불가	

기타사항

-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본인 제외 비상연락처 기입 필수)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가족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연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 (051) 851-7006

2024. 6. 10.

연제구가족센터장